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11. 20.

기획행정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총무과장)
- 제출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1. 20.)

2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(장기근속·퇴직자 일률적 지원 등 관행 개선) 반영
-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세부내용 보완

3. 주요내용

- 후생복지사업의 정비(안 제6조, 제13조)
-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별도 편성근거 신설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제4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3. 10. 4.~10. 24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, 「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별도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‘치료중인’에서 ‘투병이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’으로 격려금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변경하여 도움이 필요한 직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